

【 9 】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8. 3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 ('94. 3. 16) 및 동법시행령 개정 ('94. 7. 6)으로 인하여 동 조례와 관련된 결산검사위원 인원수와 일비를 조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결산검사위원 인원수 및 일비의 상향조정과 검사위원수 중 의회의원의 범위를 규정  
(안 제2조)

-----  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며, 지방의회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(별표2) 중 일비란의 “30,000원”을 “5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제2조(위원의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.  (별표 2)	제2조(위원의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며,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 (별표 2)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액 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 비</td><td>30,000원</td></tr> <tr> <td>여 비</td><td>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군수 상당액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액 수	일 비	30,000원	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군수 상당액	<table border="1"> <tbody> <tr> <td>-----</td><td>-----</td></tr> <tr> <td>-----</td><td>50,000원</td></tr> <tr> <td>-----</td><td>-----</td></tr> </tbody> </table>	-----	-----	-----	50,000원	-----	-----
구 분	액 수												
일 비	30,000원												
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2”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군수 상당액												
-----	-----												
-----	50,000원												
-----	-----												

## 【 10 】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8. 3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## 제안이유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(92.12.8)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자원재활용 (안 제3조)
- 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(안 제4조)
-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지도 (안 제5조)